

제4장 이용계약

제08조(계약기간)

-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09조(계약목적)

-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.
- ②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0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①월 이용료

(1)월 이용료는 <별표1>과 같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②본인부담금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	보험료	85%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중 85%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.
자부담	본인부담금	15%	보험공단이 85%이고 개인 부담금이 15%
		0.6%	의료급여수급자, 경감대상자의 경우 0.6%
		0.9%	의료급여수급자, 경감대상자의 경우 0.9%
		0%	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

③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(1)비급여항목(한도이상의 급여제공, 장보기비용 등) <별표1>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(보호자)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.
- (1)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는 전액 실비로 하되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- (2)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병원동행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%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
- (4)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

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.

(5)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④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(1) 권리

- 1)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2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3)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
- 4)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(2) 의무

- 1)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2)본인부담금 및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
- 3)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4)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5)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

(1)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)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)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보호자의 허락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- 4)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

경우

- 5)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6) 인정서 내용-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미납관리는 미납대장을 따로 사용한다.

(2)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해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가)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다)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수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마)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
- 바)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